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12 발의연월일: 2020. 9. 15.

발 의 자 : 야진비 · 김승원 · 노웅래

박홍근 • 서영교 • 양원영

위성곤 • 유정주 • 이병훈

이수진 • 이용빈 • 이원욱

이형석 · 정필모 · 황운하

의원(15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, 치료 등 방역조치를 조직적 ·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,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.

따라서 정부의 방역조치를 조직적·계획적으로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보다 강한 처벌과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역학조사, 감염병 예방 및 방역조치 등을 단체나 다중(多聚)의 위력(威力)을 통하여 조직적·계획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들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까 지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국민의 건강과 생 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2조의2, 제79조제 2항 및 제79조의3제2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2조의2(손해배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9조제2항 또는 제79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경비가 발생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  -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
- 제7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②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단체나 다중(多衆)의 위력(威力)을 통하여 조직적·계획적으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- 제7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② 제41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관리, 제42조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, 제47조에 따른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또는 제

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통하여 조직적·계획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) 제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9조제2항 또는 제7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죄 를 범하여 국가의 경비가 발생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분부터 적 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72조의2(손해배상) ① 국가 또
	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9조제2
	항 또는 제79조의3제2항을 위
	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
	로 인하여 제64조부터 제68조
	까지의 경비가 발생하여 입은
	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	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
	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
	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
	<u>있다.</u>
제79조(벌칙) (생 략)	제79조(벌칙) ① (현행 제목 외의
	부분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
	단체나 다중(多衆)의 위력(威
	力)을 통하여 조직적・계획적
	으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
	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
	<u>1까지 가중한다.</u>
제79조의3(벌칙) (생 략)	제79조의3(벌칙) ① (현행 제목
	외의 부분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② 제41조에 따른 감염병환자
	등의 관리, 제42조에 따른 감염

변에 관한 강제처분, 제47조에 따른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또는 제49조에 따른 감염병명의 예방조치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통하여 조직적·계획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